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6. 19 선고 2016가단11076(본소), 2016가단5378(반소) 판결
[대여금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18. 5. 29.

판결 선고 2018. 6.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3,5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11. 25.부터 2015. 6.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현장 총괄 감독, 하도급업체 관리, 도급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경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가 C에게 도급한 '영주공장 양산라인 설비 이동 유틸리티 전기 이설공사(대금 239,000,000원)'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이하 '부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148,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2015. 4. 30.경 그 공사대금 중 48,840,000원을 피고가 관리하던 주식회사 신화산업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C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C은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48,840,000원을 2018. 1. 5.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2018. 3. 19.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고, 원고의 처 F이 C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딸 G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C의 발행 주식 총 40,500주 중 32,400주(80%)를 자기 명의로, 나머지 8,100주(20%)를 F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부광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고 C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을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C임이 밝혀지자 2018. 1. 5. C으로부터 피고의 횡령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적으로 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C의 이익과 손실이 궁극적으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먼저 2016.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2016. 12.경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피고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123)에서 피해자가 원고 개인이 아닌 C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자 C이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불편함을 피하고자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해서 피고가 C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을 회피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 신탁법상 금지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가 횡령한 48,84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C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4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2010년분 노임 12,000,000원, 4년분 명절 상여금 32,000,000원,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영주 공사현장의 직원 및 일용직 경비, 유류대 등 35,000,000원, 피고가 원고 대신 2013. 6.경 지급한 드럼 연마기 수리비 12,000,000원,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원자력 공사 현장 내 각종 경비 8,500,000원, 퇴직금 및 부당해고금 39,000,000원, 영주 공사현장의 교통비, 유류대 등 35,000,000원 합계 17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실제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에서 100,000,000원, H에서 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03,500,000원(= 173,500,000원 +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은진